

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/입소 환자의



권리 바로 알기

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(입소)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.

권리고지 제도

I 무엇이나요?

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**‘정신질환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’**를 입원(입소)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.

국제연합(UN)
「정신장애인 보호원칙」
(1991, M원칙 15-3)

“비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모든 환자는 비자발적 환자로 계속 입원 되어야 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퇴원할 권리를 가지며, 그 권리를 고지받아야 함.”

헌법재판소
(2014헌가9 결정)

“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.”

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구분

권리고지 내용

입원 시 일반사항
: 모든 환자 대상
(법 제6조/시행규칙 제2조)

입원적합성 심사, 조사원 대면조사, 퇴원 등 / 처우개선
심사 및 재심사, 권익보호, 타 장소 수용 및 가혹행위
금지, 특수치료 시 사전 안내 및 동의, 통신 / 면회 및
신체적 제한 최소화, 인신구제 청구 / 인권위원회 진정

조사원 대면조사 신청권
: 비자의 입원(보호/행정)
환자(법 제45조)

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



일반사항
시행규칙 제2조 제1항
각 호(제1호~제9호)

조사원 대면조사
신청권 고지 및
의사확인

I 왜 알려야 하나요?

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(입소)하는 **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, 복지서비스 선택 등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** 고지되어야 합니다.

I 누구에게 고지할까요?

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에 대한 고지는 입원하는 **환자와 보호의무자*** 각각에게 고지합니다.

권리고지 내용	고지 대상
입원 시 일반사항	모든 입원 환자
조사원 대면조사 신청권	비자의 입원(보호/행정) 환자

* 동의/보호입원: 법적 보호의무자
자의/행정입원: 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도 가능

I 언제 해야 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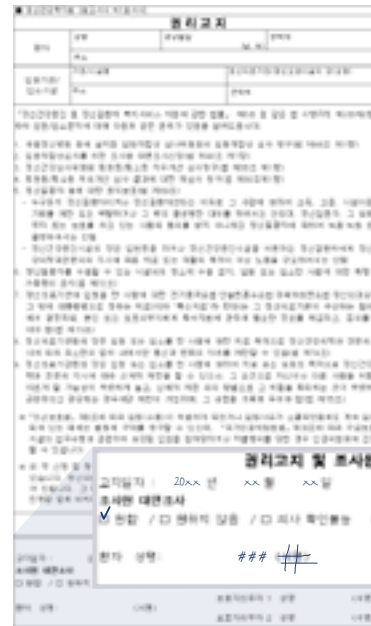
입원이 결정되면 **'지체없이'** 환자의 권리와 권리 행사 내용을 고지합니다.

I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?

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고지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권리고지서의 모든 내용을 고지했다면, 환자/보호의무자의 서명을 받습니다.

- 자의입원 유형, 응급입원: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
- 비자의 입원(보호/행정): 고지 사실 및 대면조사 신청 여부 확인



서명

고지확인: 자의·동의·응급입원

고지확인 및 대면조사 신청여부 확인: 보호·행정입원

서명자: 환자 및 보호의무자

※ 특히, 비자의 입원 환자의 경우

권리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대면조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시고 만일, 입원 시점에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재고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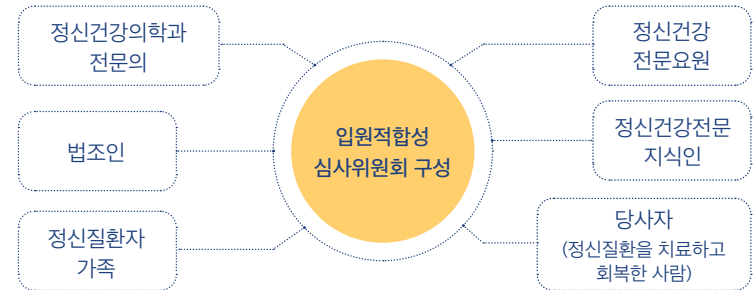
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(입소) 환자의 권리

I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면조사

-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 심사

(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1항, 이하 법)

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비자의 입원을 한 모든 환자의 입원적합성, 퇴원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.



대상

-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(보호/행정입원)



심사시기

-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



심사항목

- 법에 따른 입원 등의 절차
- 신고 당시 입원 등의 필요성
- 환자의 진단과 증상/치료 경과에 따른 퇴원 필요성 등



심사결과

- 입원 등 유지(입원일~3개월 기간 안에 치료 유지 가능)
- 퇴원(지체없이 퇴원)

- 조사원 대면조사 (법 제48조 제1항)

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한 조사(서면/대면)를 진행합니다.

-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대면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고지자는 입원당일, 권리고지 당시 환자의 대면조사 의사를 확인하고, 권리고지서 하단에 대면조사 희망 여부를 표기 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
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

고지일자 : 20xx 년 xx 월 xx 일

조사원 대면조사 진행 / 진행하지 않음 / 의사 확인불능 ※ 서명불능 사유:

환자 성명: 이름 ### ## 서명 보호자의무자 1 성명 ○○○ (인)

보호자의무자 2 성명 ☆☆☆ (인)

I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, 처우개선 심사 및 재심사 청구

- 퇴원등, 처우개선 심사 청구 (법 제55조 제1항)

정신의료기관(정신요양시설)에 입원(입소)한 모든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는 입원 유형에 관계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입원 환자의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- 대상: 입원(입소) 환자, 보호의무자
- 방법: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(별지 제21호)
- 내용: ① 퇴원이 거부된 경우
② 정신의료기관(정신요양시설) 내 부당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(작업요법, 면회제한, 격리/강박 등)

- 재심사의 청구 등 (법 제60조 제1항)

퇴원등, 처우개선 청구에 대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치 또는 미조치에 불복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·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- 대상: ① 입원연장심사 청구 대상인 입원(입소) 환자, 보호의무자
② 외래치료지원 결정 또는 연장 결정을 받은 입원(입소) 환자, 보호의무자
- 방법: 재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(별지 제23호)
- 내용: 시·군·구청장의 조치나 미조치에 대한 불복
- 기간: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 또는 연장 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

I 인신보호구제 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

- 법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(인신보호법 제3조)

위법하게 입원(수용) 되었거나 입원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입원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- 대상: 입원(입소) 환자, 보호의무자(피수용자, 그 법정 대리인, 후견인,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동거인,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종사자)
- 방법: **구제청구서 작성 및 제출**
- 내용: ①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
②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수용이 지속되는 경우

-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(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)

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

- 대상: 입원(입소) 환자, 보호의무자 등
- 방법: **진정서 작성 및 제출**
- 내용: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

※ 권리행사에 필요한 **청구 서류나 진정서**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서류 작성을 위하여 필기구를 요구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이를 제공하고, 작성된 서류는 해당기관에 송부합니다.

I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리 보장

(법 제69조, 제72조)

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차별금지 ㊄

- 교육 고용/시설 이용 기회 제한 및 박탈 금지
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 금지
-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, 녹화, 촬영 금지
(당사자, 보호의무자의 동의 필요)
-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
-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 금지
- 입원(입소)한 사람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금지

I 특수치료 시 사전 안내 및 동의 (법 제73조)

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(입소) 환자에 대한 **특수치료***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,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합니다.

- 대상: 정신의료기관 입원(입소) 환자
- 방법: ①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
②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의 의사 확인

* 특수치료: 전기충격요법, 인슐린혼수요법, 마취하최면요법, 정신외과요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

I 통신/면회, 신체적 제한 최소화

(법 제74조, 제75조)

통신 및 면회 제한은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을 하더라도 **최소한의 범위**에서 행해져야 합니다.

신체적 제한은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 **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**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
환자의 권익을 위한 **첫걸음**입니다



보건복지부
국립정신건강센터